제70호(2020. 2. 7.)
KREI 현안분석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와 농업부문 시사점

조성주·오새라·박수연

요 약

2018년 추가관세 부과 등으로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이 2020년 1차 합의에 도달

- 미·중은 2019년 10월 미·중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였고, 2020년 1월 15일 1단계 합의의 결과물인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협정'에 서명함.
- 협정문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식품 교역,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교역 확대, 상호평가 및 분쟁해결, 최종규정 등 8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은 제3장 농식품 교역과 제6장 교역 확대임.
- 양국은 농업협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무역제한적 위생 및 식물 위생(SPS) 조치 지양, 농업부문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효율성 제고, 농업생명공학제품의 무역 촉진, 국내보조 WTO 약정 준수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합의함.

농업부문에서는 미국의 수출 확대 촉구와 무역장벽 해소 요구가 대부분 관철

- 미국과 중국은 농식품 교역 촉진을 위해 수입 제도 등을 개선할 것에 합의하고, 미국은 미국산 농식품 217개 세번에 대해 2021년까지 320억 달러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요구함.
- 미국이 중국에 꾸준히 지적해온 농업부문 무역장벽에 대한 해결을 담고 있어 320억 달러의 농식품 수출 확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협상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파악됨.

미·중 합의에 따른 농산물 국제가격 변화,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현실화 등의 국내 영향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 미·중 합의 기대로 국제 대두 선물가격은 상승추세였으나, 합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하락 기조로 돌아섬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배합사료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중국에 수입제도 개선을 요구한 품목 중 유제품과 유아용 조제분유는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이며, 미·중 합의가 이행될 경우 한국산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가격경쟁력, 시장구조, 소비자 선호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에서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미국은 양자 협의를 통한 무역갈등 해결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중 합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제기해온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갈등 발생에 대응해야 함.
- 미국이 중국에 수입 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 중에는 한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존재함. 본 협정문 이행에 따른 중국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한국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무역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01

미·중 무역분쟁 경과

2019년까지 미·중은 상호 4차례에 걸쳐 주요 수입품목 전반에 걸쳐 추가 관세를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제·외교 정책을 고수함.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수준을 안보위협으로 선언하며 중국에 강력한 시정을 요구함.

- 2018년 3월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에 근거하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됨.

2018년 추가 관세부과 등 심화 된 미·중 무역분쟁이 2020년 1차 합의에 도달[1)]

미·중은 2019년 10월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였고, 12월 14일 1단계 합의를 선언,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1단계 합의의 결과물인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협정'에 서명함.[2)]

협정문은 8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며 농업과 관련된 별도의 장을 포함

협정문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식품 교역,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교역 확대, 상호평가 및 분쟁해결, 최종규정 등 8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은 제3장 농식품 교역과 제6장 교역 확대임.

1) 상세내용은 부록의 〈부표 1〉을 참고
2)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02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 농업부문 주요내용

1.1. 개요

협정문 제3장 농식품 교역(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미국과 중국의 농식품 교역 촉진을 위한 5가지 상호 협력 사항을 밝히고 17개 부속항목(Annex)과 1개의 부록(Appendix)을 두어 품목 또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

- 미국과 중국은 농업협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무역제한적 위생 및 식물 위생(SPS) 조치 지양, 농업부문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효율성 제고, 농업생명공학제품의 무역 촉진, 국내보조 WTO 약정 준수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조

〈표 1〉 농식품 교역 부문 5가지 상호 협력 사항

구분	내용
농업협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농업 부문, 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보장, 양국 국민의 식품 및 농산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도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업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각 당사자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당사자 사이의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성장을 촉진
무역제한적인 SPS 조치 지양	과학 및 위험 기반의 SPS 조치가 인간, 동물 및 식물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보호주의의 목적을 위해 SPS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고, SPS 조치가 과학을 기반으로 비차별적이며 위생 및 위생적 특성의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어느 당사자도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SPS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
TRQ 관리 효율성 제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농업 시장 접근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받을 경우 농업 교역 시스템의 편익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TRQ의 완전한 이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TRQ 관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
농업생명공학제품 무역 촉진	농업생명공학이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도록 돕고, 농업의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고,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여, 농업생명공학 품목의 무역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 및 위험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와 효율적인 승인 프로세스를 유지
국내보조	국내보조 제공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WTO) 약정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

자료: 미-중 협정문(USTR 2020)을 바탕으로 저자작성.

협정문 제6장 교역 확대(EXPANDING TRADE)

미국은 중국에 향후 2년(2021년까지)간 미국산 공산품, 농식품, 에너지, 서비스 수입을 2017년 대비 총 2,000억 달러 확대할 것을 요구

- 농식품의 경우 217개 세번이 해당되며 미국은 이들 품목에 대해 2021년까지 총 320억 달러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요구

〈표 2〉 미국의 대중국 수출증액 계획

단위: 십억 달러

품목구분	미국의 추가 수출계획(2017년 수출액 대비)		
	1년차(2020년)	2년차(2021년)	합계
제조품	32.9	44.8	77.7
농업	12.5	19.5	32.0
에너지	18.5	33.9	52.4
서비스	12.8	25.1	37.9
합계	76.7	123.3	200.0

주: 제조품은 산업 기계, 전기 관련 제품 및 기계, 제약 품목, 항공기(주문-배송용), 운송수단(차량), 광학 및 의학 기구, 철강, 기타 제조품목을 포함, 농업은 유지종자(대두), 육류, 곡물, 면화, 기타농산물, 수산물을 포함, 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 원유, 정제 제품, 석탄을 포함, 서비스는 IP 사용료, 출장 및 관광, 금융서비스 및 보험, 클라우드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 2017년을 베이스라인으로 향후 2년간의 추가 증액분을 제시하였음.
자료: 미-중 협정문(USTR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 주요 품목 및 분야별 내용

농식품 교역부문은 농업협력,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식물위생, 동물생명공학 등 17개 부속항목와 1개의 부록(Appendix)을 포함[3)]

[농업협력] 살충제 사용과 관련한 기술협의, 농업 관련 제도 및 이슈에 대한 소통 강화, SPS 관련 조치 협력 및 디지털 기반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에 합의함.

[유제품 및 유아용 조제분유] 중국산 우유제품에 대한 수입경보 해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미국은 중국에 특정 조건을 만족한 유제품과 유아용 조제분유의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상품 또는 생산 시설 등록 등의 지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정문에 명시함.

[가금류]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4)]의 수입 허용 여부를 협정 발효 후 30일 내 결정하고, 미국은 중국의 조류 질병 청정지역 인정 평가 절차를 중국의 평가 요청 후 30일 내 개시하는 데 합의함.

[쇠고기]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에 있어 '소 연령 요건'(age requirement)[5)] 해지, '소해면상뇌증 관련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 도입 금지' 등에 합의함. 또한, 미국은 중국에 일부 품목[6)]을 제외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본 협정 발효 한 달 내 허용할 것을 요구함.

- 협정문 쇠고기 수입 관련 내용은 2017년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프로토콜'에 우선(prevail over)하며 문서 간 불일치 내용은 이번 협정문을 기반으로 수정할 수 있음.

3) 농식품 교역 16개 부속항목(17개 중 수산물 제외)과 부록(Appendix)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함. 상세 내용은 〈표 3〉과 협정문 원문을 참고
4) 2015년 1월 1일 이전 수입되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5) 중국이 수입을 허용하는 품목에 소 연령 요건이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 없는 쇠고기, 심장을 포함한 뼈 있는 쇠고기, 신장, 간, 제3위, 힘줄, 안창살, 업진안살, 토시살, 소꼬리, 뼈, 우족, 볼살, 머리 고기, 입술, 백스트랩, 피막조직, 간 쇠고기(신장을 제외하며 FSIS 규정을 엄격히 준수), 소 혀"(USDA FSIS)
6) 중국은 협정문의 Appendix 1에 수입 불가 품목을 나열함.

[살아있는 번식 소] 중국은 미국산 살아있는 번식 소 수입에 필요한 기술적 논의를 협정 발효 후 한 달 내 개시하기로 합의함.

[돼지고기] 미국과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박멸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협정 발효 후 10일 내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검사가 완료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데 합의함.

[육류, 가금육, 가공육] 중국은 미국 FSIS가 승인한 시설에서의 검사가 완료되고 FSIS의 수출증명서가 발급된 육류, 가금육, 가공육 관련에 대해 본 협정 발효 후 수입을 허용하기로 함.

- 중국은 미국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락토파민 위험평가(소·돼지)를 지체없이 시행하기로 합의함.

[육류 및 가금류 전자정보시스템] 미국 농무부(USDA)와 중국 관세청(GACC)은 수출증명 관련 기술요건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중국이 FSIS 수출증명서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자동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함.

[쌀] 중국은 미국 동식물검역국(APHIS)이 승인[7]한 쌀 생산시설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마다 20일 내 시설을 등록하고 해당 시설로부터 생산된 쌀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함.

[식물위생] 중국과 미국은 양국의 식물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제통보 프로세스, 식물위생 프로토콜 등에 대해 합의함.

- 중국산 분재(Bonsai), 배(Fragrant pear)[8], 감귤류(Citrus), 대추(Jujube), 미국산 감자(신선), 캘리포니아산 승도복숭아(Nectarine), 블루베리, 캘리포니아산 아보카도(Hass 종), 보리에 대해 합의

[사료첨가물, 프리믹스, 복합사료, 주정박] 중국은 미국산 사료첨가물, 프리믹스, 복합사료, 주정박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들에 합의하고 수입 라이센스 발급과 갱신 등의 절차를 특정 기간 내 완료하는 데 합의함.

[애완동물 사료와 비반추동물 유래 동물 사료] 중국은 반추동물 원료를 포함한 미국산 애완동물 사료에 취해진 수입금지를 해제하고 그 품목들에 대한 PCR 검사[9]를 없애기로 합의함.

[저율관세할당(TRQ)] 2019년 12월 31일부터 중국은 밀, 쌀, 옥수수 TRQ(Wheat, Rice, Corn TRQ, 이하 WRC TRQ)에 대한 조치들이 WTO 패널 보고서, WTO 협정 및 중국의 TRQ 이행 양허 등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WRC TRQ 소진을 억제하지 않기로 함.

7) "Phytosanitary Protocol on the Import of Rice from the United States to China"를 준수
8) Fragrant pear는 서양배에 가까운 외형을 가진 품종임.
9)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이란 "적은 양의 DNA로부터 많은 양의 DNA를 단시간(2시간 이내)에 합성"(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8)하는 기술로 분자생물학 연구에 필수적이며, 사료검사에 보편적으로 사용됨.

[국내보조] 중국은 국내보조 프로그램 및 정책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 현황을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WTO의 의무를 존중해야 함.

[농업생명공학] 양국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해 농업생명공학 기술을 교류하기로 함. 중국은 농업생명공학제품의 효율적인 승인을 위한 절차에 합의하고 비의도적 저수준혼입(low-level presence) 문제 발생과 관련한 관리방법을 결정하기로 함.

[식품안전성] 양국은 과학 또는 위험 기반의 조치가 아닌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상대국에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기로 함. 만일 그러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Appendix I]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제품

〈표 3〉 농식품 교역 부문 주요 품목 및 분야별 합의 상세 내용

구분	주요내용	상세내용
농업협력	다양한 부문의 농업협력 촉진	• 기술 협의(살충제 사용), 주요 농업 이슈에 대한 정부기관 논의 내용 공유, 상호 관심 부문에 대한 대화 촉진,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동물 및 식물 병해충 및 질병 발생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농업과 관련된 SPS 조치(위험정보공유 등)에 대한 협력, 디지털 기반 협력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한 농업협력 촉진 - 당사국들의 살충제 등록 자료, 살충제 시험 자료, 최소잔류허용 수준의 결정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기술협의를 진행할 것에 합의함. - 상호 관심 부문인 농업 생산, 작물보험, 농업 교역, SPS 제도, 농촌개발 등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소통을 촉진하기로 함. - 2019년 디지털 경제 관련 오사카 선언에 기반하여 농업부문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유제품 및 유아용 조제분유	중국산 우유제품 수입경보 해제 및 미국산 유제품 및 유아용조제품 수입허용	• 중국관세청(GACC)과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본 협정 발효 즉시 미국이 중국산 우유 제품 등에 취해온 수입경보조치(Import Alert 99-30)[1] 해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함. • (미국산 유제품) 중국은 협정 발효 즉시 FDA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고 미국 농무부(USDA)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의 유제품 위생 증명서가 발급된 미국산 유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데 합의함. 중국은 협정 발효 10일 내 미국의 유제품 안전 시스템이 중국의 것과 동일한 보호 수준을 제공함을 인정하기로 함. - 중국은 미국산 ESL 우유(extended shelf life milk) 수입을 허용하고 저온살균우유(pasteurized milk)로 판매하며, 강화우유(fortified milk)와 UF 우유(ultrafiltered milk)의 수입을 허용하고 저온살균조제유(pasteurized-modified milk)로 판매하며, 퍼미에이트 분말(permeate powder)의 수입을 허용하는 데 합의함.[2] - 중국은 미국의 강화우유와 UF 우유의 경우 "저온살균조제유"라고 라벨링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함. - 중국은 협정 발효 60일 이내에 미국산 퍼미에이트 분말을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승인을 완료하는 데 합의함. - 중국은 미국이 FDA 승인 시설과 제품에 대해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정보 수신 후 20일 이내에 해당 시설과 제품을 국내에 등록, 이를 GACC 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미국산 유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데 합의함. • (미국산 유아용 조제분유) 중국은 미국산 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검사 및 결정에 미국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412조를 충분히 고려하며, 미국산 유아용 조제분유의 상품 등록 기술 검토를 45일 내 완료하고, FDA의 기존 상품 검토, 검사, 시설에 대한 규제표준 결정이 있을 시 20일 내 기술 검토 또는 감사, 검사, 샘플링, 시험 등을 완료하는 데 합의함. 또한, 중국은 미국의 유아용 조제분유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4

구분	주요내용	상세내용
		년, 상품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주기의 등록 갱신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함. – 중국은 협정 발효 1주 내 검토가 지연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생산 시설(중국에서 생산품의 승인은 완료된)의 등록을 완료하고 GACC에 시설 명단을 게시하기로 함. • (감사와 검사) 중국은 유제품과 유아용 조제분유 생산 시설에 대한 모든 검사나 감사에 앞서 최소 20일 이전에 FDA, USDA, 그리고 해당 시설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효율성 및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현장 감사 또는 검사를 상품 또는 시설 등록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함.
가금류	수입허용 결정 및 청정지역 인정 관련	• 양국은 본 협정 발효 후 30일 내 '특정 가금류 질병에 대한 통보 및 통제 절차에 관한 협력 프로토콜'에 서명하기로 약속함.
쇠고기	미국산에 대한 수입 요건 변경 및 합성호르몬 기준 설정	•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에 있어 '소 연령 요건' 해지, '소해면상뇌증 관련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 도입 금지' 등에 합의함. – 중국은 미국이 위험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요청자료를 제출했음을 인정하고, 본 협정 발효 후 한 달 안에 미국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소 연령 요건'을 제거하는 데 합의함. – 중국은 미국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추적시스템을 인정함. 미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지위(Negligible risk status)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그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BSE와 관련된 새로운 수입 제한 또는 요건'을 도입하지 않는 데 합의함. 미국의 지위 변경 시 중국은 국제기준에 따른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국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성장촉진용 합성호르몬인 제라놀, TBA, MGA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허용수준(MRL) 기준을 채택하고 쇠고기 조직에 대한 위 호르몬의 MRL은 코덱스 기준(기준 존재 시) 또는 적절한 과학적 위험평가에 따라 설정된 다른 국가의 잔류허용수준을 참고하여 설정하기로 함(기준 부재 시).
살아있는 번식 소	기술적 논의 개시	• 양국은 미국산 살아있는 소의 중국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수입 프로토콜 등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함.
돼지고기	미국산 수입허용	• 중국은 FSIS의 검사가 완료된 미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 허용에 합의
육류, 가금육, 가공육	미국산 수입허용	• 중국은 본 협정 발효와 함께 FSIS가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육류, 가금육, 가공육 생산시설을 관리·감독함을 인정하고 FSIS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 검사되고 FSIS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상품의 경우 Appendix I의 품목을 제외하고 수입을 허용하기로 함.
육류·가금류 전자정보 시스템	전자자동 시스템 시행	• 미국은 이미 시스템(FSIS 수출증명서 관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중국도 2020년 2월까지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함.
쌀	쌀 수입 허용	• 중국은 미국 APHIS가 승인한 생산시설로부터 생산된 미국산 쌀 수입 허용에 합의
식물위생	규제통보 프로세스, 식물위생 프로토콜 합의	• 미국과 중국은 협정 발효 후 한 달 내 중국산 분재(Chinese Bonsai) 미국 수출을 위한 식물위생 프로토콜 수립을 위한 기술협의를 개시하기로 함. • 미국(USDA/APHIS)은 협정 발효 후 45일 내 중국산 배(Fragrant pear), 두 달 내 중국산 감귤류(Citrus), 한 달 내 중국산 대추(Jujube) 수입을 위한 규제통보 프로세스를 완료하기로 함. • 미국(USDA/APHIS)과 중국(GACC)은 협정 발효 후 7일 내 미국산 감자(신선), 한 달 내 캘리포니아산 승도복숭아(Nectarine), 세 달 내 미국산 블루베리, 캘리포니아산 아보카도(Hass 종), 미국산 보리의 중국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 프로토콜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함. • 중국(GACC)은 협정 발효 후 한 달 내 미국(USDA/APHIS)과 미국 알팔파 목초 펠릿과 큐브, 아몬드박 펠릿과 큐브, 티모시 목초 생산지를 현장 방문하고, 양국은 세 달 내 이들 품목의 중국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 프로토콜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함.
사료첨가물, 프리믹스, 복합사료, 주정박	미국산 수입 조건 개선	• 중국은 미국산 사료 첨가물, 프리믹스, 복합사료, 주정박의 수입 승인 또는 생산 시설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현장 감사 또는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수출 프로토콜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함.
애완동물 사료와 비반추동물 유래 동물 사료	미국산 수입금지 해제	• 반추동물 원료를 포함한 미국산 애완동물 사료에 취해진 수입금지를 해제하고 그 품목들에 대한 PCR 검사를 없애기로 합의
TRQ	밀, 쌀,	• 연도별 전체 TRQ는 최종사용자에게 당해년 1월 1일에 할당되어야 하며, 국영무역기

구분	주요내용	상세내용
	옥수수 TRQ WTO 양허 이행	업에 할당되거나 '국영무역기업의 몫'으로 지정된 물량들의 미사용 및 반환분은 매년 10월 1일까지 재할당되어야 함. – 중국은 밀, 쌀, 옥수수 TRQ에 대한 모든 적격기준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모든 원칙들을 명확히 명기하여 발표해야 함. 또한, 각 당사자는 현행 법률, 규정 및 WRC TRQ의 관리에 관한 공고를 웹사이트에 공개·게시하며, 변경사항을 적시에 발표해야 함. 당사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협정문의 '상호평가 및 분쟁해결'의 내용에 따라 TRQ 관리에 대한 협의를 실시함.
국내보조	WTO 의무 존중	• 국내보조 관련 통보 의무 이행 확인
농업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개선 등	• 중국은 농업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허가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효율적이면서 과학적인 규제 프로세스를 시행하여야 함. – 중국은 국제표준 및 권고(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 보호 협약) 및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따라 안전 평가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농업생명공학제품에 대해 최소 5년의 승인 기간을 설정해야 함. – 중국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유전자 변형 미생물로부터 유래된 식품성분의 승인을 위한 단순화되고 예측가능하며 과학적이면서 위험에 기초한 효율적인 안전성 평가절차를 수립 및 공개해야 함. 사료, 추가가공 등과 관련한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경우, 중국은 (a) 해당 제품의 승인을 위한 공식 신청서의 제출, (b) 제품의 승인 또는 거절에 대한 최종 결정의 두 절차 사이의 평균 소요기간을 24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함. • 중국은 농업생명공학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승인을 위해 다음의 내용에 합의함. – 농업생명공학제품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공식신청서를 신청서 양식의 신청요건과 비교하고,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국가 바이오안전 위원회(National Biosafety Committee, 이하 NBC)가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신청자의 추가정보가 필요할 경우, 필요성을 확인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청자는 위원회로부터 요청된 정보가 제품의 의도된 사용의 안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함. – 매년 최소 2회의 NBC 회의를 소집하고, 안전성 평가 신청 횟수에 따라 NBC 회의의 빈도를 늘려 개최함. – 최종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NBC 회의 종료 후 20영업일 이내에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바이오안전 인증서(biosafety certificate)를 발급하여야 함. •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선적에 영향을 미치는 비의도적 저수준 혼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무역에 불필요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미국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로 함.
식품안전성	과학 또는 위험 기반 조치	• 과학 또는 위험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를 도입하거나 상대국에 요구하지 않기로 함.
Appendix I	미국산 수입 미허용	•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다음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제한함. –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갑상선, 부신, 요도선, 편도선, 도축 및 절단 중에 노출된 주요 림프절, 후두근 조직, 폐, 췌장, 비장, 담낭, 자궁, 머리카락, 발굽 및 유선 등 – 소의 뿔 – 모든 월령의 소로부터 기계적으로 분리된 쇠고기와 회장(소장의 말단 부분) – 30개월 이상 된 소의 소해면상뇌증 위험물질(일명 SRM; 뇌, 두개골, 눈, 3차신경절, 척수, 배근신경절, 등뼈(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 – 가금류의 깃털, 머리, 내장 및 꼬리

주 1) 미국 FDA는 2008년 중국에서 멜라민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아용 조제유의 소비로 인해 수천 건의 영아 질병이 발생하고, 그 오염원이 우유라는 것이 알려지자 "우유 제품, 우유 유래 원료가 포함된 식품 전반에 대해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 조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of All Milk Products, Milk Derived Ingredients and Milk Containing Finished Food Products from China Due to the Presence of Melamine and/or Melamine Analogs)"라는 수입경보조치를 취함.

2) 퍼미에이트는 탈지유에서 카제인과 유청단백을 생산하고 남은 유당과 회분 등을 말함.

자료: 미-중 협정문(USTR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03

미·중 1단계 합의 평가 및 시사점

3.1. 미·중 1단계 합의 농업부문 평가

미국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촉구와 농업부문 무역장벽 해소 요구가 대부분 관철

합의대로 미국이 2017년 대비 320억 달러 수준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입선 전환과 수입수요 증대, 미국의 수출선 전환 등이 요구됨.

- 중국의 대세계 농업부문 수입액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대두, 육류, 곡물, 면화 등의 품목 수입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표 4〉.
- 중국이 미국산 농식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입선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미국이 대중국 수출 확대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을 2017년 수준으로 회복시킴과 동시에 수출선을 중국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제시한 농식품 추가 수출액은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기타농산물 부분의 수출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품목별로 수입 저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됨.

미국이 중국의 무역장벽으로 꾸준히 지적해온 축산물 위생검역조치,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의 인식, 생명공학제품의 승인 문제, 원예작물 식물위생 등의 SPS 조치, 그리고 TRQ 운영 효율화 및 투명한 관리 등[10]에 대한 개선 및 해결이 합의사항에 담김.

미국도 중국의 농산물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내용에 합의하였으나 중국의 합의 수준에 비해 미미한 수준

미국의 합의사항은 중국산 수입경보 해제를 위한 협의에 착수, 기술협의 개시, 식물위생 관련 규제통보 프로세스 작업 완료 등으로 중국이 합의한 수입허용, 수입조건 해제, 수입 식물위생 프로토콜 서명 등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 판단됨.

10) 조성주 외(2019)

미·중 1단계 합의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이행 현실성은 한계로 지적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보조금 등의 특정 문제에 대해 권고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또한,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미국이 농업부문 대중국 수출 확대 목표치만큼 단기간에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합의 이행의 불확실성을 제시함.[11)]

〈표 4〉 중국의 미국 교역 확대 대상 품목 수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분	대미국 수입			대세계 수입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농업 합계	23.9	24.1	16.2	110.5	124.4	136.3
- 대두	13.8	14.0	7.1	34.0	39.7	38.1
- 육류	1.4	1.2	0.5	10.3	9.5	11.0
- 곡물	1.6	1.5	0.9	6.6	7.4	7.0
- 면화	0.5	1.0	1.1	1.7	2.3	3.2
- 기타농산물	5.6	5.1	5.3	50.9	57.4	65.1
- 수산물	1.0	1.3	1.3	7.1	8.3	11.9

자료: Global Trade Atlas (https://connect.ihs.com/hom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검색일: 2020. 1. 17.

3.2. 국내 영향 및 시사점

미·중 합의는 무역분쟁의 주요 영향 품목인 대두, 돼지고기 등의 국제가격에 영향[12)]을 미침

미·중 합의 기대에 따라 국제 대두 선물가격은 2019년 10월 이후 상승추세였으나, 합의 이후 합의 이행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13)]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배합사료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브라질산 수입 확대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국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였고, 관련 산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14)] 중국이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확대할 경우 미국산 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재는 합의 이행 불확실성이 크므로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

돼지고기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으로[15)], 중국이 미·중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확대할 경우 국제가격 상승이 예상됨.

11) 무역협회(2020)
12) 문한필 외(2019)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중 무역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국제가격과 교역흐름이 변화함.
13) 시카고 선물거래가격은2019년 5월 연중 최저치인 톤당 291달러 기록, 12월 말 346달러까지 상승, 2020년 1월 31일 현재 321달러까지 하락(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2020)
14) 문한필 외(2019)
15) 이형우 외(2019)

-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한 세번을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 2019년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생산감소로 중국의 대세계(미국 포함)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함.[16)]
- 중국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제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량은 감소할 전망임.[17)]

한국의 유제품이나 유아용 조제품 대중국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파급영향의 규모는 가격, 소비자의 선호 등에 따라 결정됨.

국내 농업에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생우유를 포함하고 있는 HS 0401호와 유아용 조제분유를 포함하고 있는 HS 1901호라고 볼 수 있음.[18)]

- 미국산 수출 확대 요구와 함께 중국이 미국산 유제품 및 유아용 조제분유와 관련하여 수입제도개선 및 변경을 요구한 내용을 모두 이행할 경우, 무역이 원활화되어 미국산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중국은 한국산 수입품목을 미국산으로 일정 부분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는 해당 품목의 가격, 상품 특성, 소비자 선호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19)]

- 미·중 1차 합의에도 상호 추가관세는 유지되며, 향후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미국산 유아용 조제분유에는 15% MFN + 25% 보복관세, 생우유에는 15% MFN + 25% + 5% 보복관세가 유지될 전망임.
- 유아용 조제분유(HS 190110)의 경우 한국산보다 미국산의 수입단가가 높으며[20)], 미국산에 MFN 관세 15%[21)]와 추가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측면 경쟁력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현지시장 동향 모니터링과 산업계 의견 청취를 통해 애로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16) 문한필 외(2019)
17) 이형우 외(2020)
18) 유아용 조제분유(HS 190110)의 경우 2018년 기준 대세계 수입 중 한국산은 10위(7.6천만 달러), 미국산은 9위(9.5천만 달러)로 중국 시장에서 유사한 비중(1.6~1.9%)을 차지함. 우유 중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HS 040120)의 경우 2018년 기준 대세계 수입 중 한국산은 6위(1.6천만 달러), 미국산은 20위(4백만 달러)로 한국산 비중이 높음.
19) 한국산 유아용 조제분유의 경우 중국 내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브랜드화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 2017년 기준 한국산 11.23$/kg, 미국산 15.86$/kg
21) 한-중 FTA에서 중국은 중국 세번 기준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19011000)은 양허 제외함. 한국이 한-중 FTA를 활용해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MFN 관세를 적용받음.

〈표 5〉 중국의 미국산과 한국산 농업 관련 품목 수입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대미국 수입			대한국 수입		
품목명	HS 4단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농업 합계	계	23,850 (21.6)	24,090 (19.4)	16,158 (11.9)	936 (0.8)	871 (0.7)	956 (0.7)
- 대두	계	13,766 (40.5)	13,945 (35.2)	7,065 (18.5)	0 (0.0)	0 (0.0)	0 (0.0)
- 육류	계	1,353 (13.2)	1,187 (12.6)	537 (4.9)	6 (0.1)	3 (0.0)	3 (0.0)
- 곡물	계	1,550 (23.6)	1,533 (20.8)	922 (13.2)	2 (0.0)	2 (0.0)	2 (0.0)
- 면화	계	509 (30.5)	983 (42.8)	1,064 (33.5)	2 (0.1)	1 (0.0)	0 (0.0)
- 기타농산물	계	5,640 (11.1)	5,122 (8.9)	5,315 (8.2)	762 (1.5)	743 (1.3)	839 (1.3)
	1701	0 (0.0)	0 (0.0)	0 (0.0)	103 (8.8)	101 (9.4)	87 (8.5)
	1902	2 (0.9)	2 (1.0)	2 (0.9)	53 (30.5)	109 (45.8)	103 (41.4)
	1901	76 (2.2)	80 (1.8)	103 (1.9)	113 (3.3)	66 (1.5)	82 (1.5)
	2106	341 (22.9)	399 (20.8)	602 (22.0)	90 (6.1)	56 (2.9)	80 (2.9)
	2008	104 (22.5)	133 (26.0)	199 (30.0)	85 (18.3)	68 (13.2)	73 (10.9)
	2203	9 (1.3)	9 (1.2)	13 (1.4)	25 (3.8)	50 (6.6)	91 (10.1)
	2402	3 (0.5)	2 (0.5)	1 (0.1)	20 (3.5)	30 (5.8)	43 (6.8)
	2009	20 (9.1)	19 (6.6)	27 (7.7)	30 (13.2)	29 (10.3)	33 (9.4)
	1905	23 (3.0)	20 (2.5)	21 (2.5)	42 (5.5)	25 (3.2)	22 (2.7)
	2103	16 (10.7)	17 (11.0)	16 (9.0)	22 (15.1)	20 (13.0)	26 (14.8)
	0401	1 (0.1)	0 (0.0)	0 (0.0)	16 (2.5)	14 (1.6)	16 (1.8)
	0802	214 (40.5)	345 (47.8)	511 (54.8)	12 (2.3)	17 (2.4)	16 (1.7)
	1302	21 (11.4)	20 (9.4)	26 (9.7)	11 (6.0)	16 (7.6)	16 (5.9)
- 수산물	계	1,033 (14.6)	1,319 (15.9)	1,256 (10.5)	163 (2.3)	122 (1.5)	111 (0.9)

주: 기타농산물에 해당하는 HS 4단위 상세품목은 2018년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만 표기함. 괄호 안은 중국의 대세계 수입액에서 원산지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기타농산물 HS 4단위 품목명은 부록의 〈부표 2〉를 참고.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connect.ihs.com/hom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검색일: 2020. 1. 17.

미·중 합의 결과와 미국의 통상전략을 고려,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

미국은 다자보다 양자 협의를 통해 무역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갈등 발생 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SPS 조치 등의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우리나라의 신선 농축산물의 수입금지, 주류라벨링, 농약잔류허용기준 제도를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제기하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22]
-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30개월령 소 연령 요건을 협정 발효 후 한 달 내에 해제하는 데 합의하였음.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LT30 Age Verification)'에 따라 생산된 상품을 수입 허용함.[23] 미국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위생조건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함.

협정문 이행에 따른 중국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한국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할 필요

미국은 자국의 동물 및 식물위생,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의해 검사가 수행되고 승인이 완료된 제품 또는 시설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며, 중국이 검사 등의 승인과정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무역을 저해하는 절차를 추진하지 않도록 촉구함.

- 미국은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육류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에 승인, 인정, 감사 등을 이유로 절차상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또한, 중국이 미국의 유제품 안전 시스템이 중국의 제도와 동일한 보호 수준을 제공함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동등성[24] 원칙에 따른 인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 유아용 조제분유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중국의 생산시설 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수출 활성화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25]

22) 조성주 외(2019)
23)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98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USDA FSIS 홈페이지를 참고
24) WTO SPS 협정 제4조 동등성(Equivalence) 조항에 따르면 "수출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사용조치가 자국 또는 여타국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
25) 스포츠서울(2019)

부 록

〈부표 1〉 미국과 중국의 추가관세 부과 동향

	미 국			중 국		
	규모	대상품목	추가 관세	규모	대상품목	보복 관세
미국 측 무역구제조치[1]	–	철강	25%	128개 ($28.7억)	농축산물, 강관 등(120개)	15%
		알루미늄	10%		돈육가공품, 재생 알루미늄 등(8개)	25%
1차 (18. 7. 6.)	818개 ($326억)	원자로,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카메라, 의료기기 등	25%	545개 ($338억)	농축산물, 수산물, 자동차 등	25%
2차 (18. 8. 23.)	279개 ($136억)	반도체, 전자담배 등	25%	333개[2] ($141억)	화학, 에너지, 의료제품, 트랙터, 트럭 등	25%
3차 (18. 9. 24.)	5,745개 ($1,905억)	냉장고, 건조기, 타이어, 농축산물 등	10%	5,207개[3] ($534억)	쇠고기, 연어, 티타늄제품, 섬유제품 등	5%, 10%
유예 (18. 12. 1.)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					
3차	5,74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19. 5. 10.)		25%	5,207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19. 6. 10.)		5%, 10%, 20% 25%
4차 (19. 9. 1.)	3,229개 ($1,120억)	공산품, 동물성식품, 음료 및 담배류, 유제품, 과채류 등	15%	1,717개 품목 (19. 9. 1.)		5%, 10%
예정 (19. 10. 15.)	6,842개 ($2,500억)	1차, 2차, 3차 목록 관세 인상	30%	–		
예정 (19. 12. 15.)	542개 ($1,600억)	4차 목록 일부	15%	3,361개 품목		5%, 10%
관세면제 (19. 7. 9.)	1차목록 110개 품목	의료장비, 전자기기	면제	–		
관세면제 (19. 9. 17.)	–			16개 품목	사료용 어분 등 12개	환급 및 면제
					사료용 유청 등 4개	면제
부과계획보류 (19. 10. 10-11.)	미·중 장관급 협상 부분적 합의에 따라 부과계획 잠정 보류 - 미국: 10. 15. 발효 예정 2,5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대중 추가관세 부과 인상계획 철회					
부과계획보류 (19. 12. 15.)	미·중 1단계 합의 도달에 따라 양국은 12. 15. 발효예정이던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함. -중국: 1차 추가관세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2020. 12. 25.까지 잠정 중단					

주 1) 2018년 3월 23일 미국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주요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관세 부과, 쿼터 설정 등의 수입제재조치를 취하였고 4월 2일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미 주요 수입품목 128개에 관세를 부과함.

2) 1차 리스트(545개)의 부분 수정안이라고 볼 수 있음.

3) 중국은 2차 리스트라고 명칭

4) 관세면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자료: 조성주 외(2018), 중국 재정부 관세사(http://gss.mof.gov.cn/)의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부표 2〉 〈표 5〉의 HS 4단위 상세 세번 국문명

HS 4단위	국문명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203	맥주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0. 1. 21.

참고문헌

무역협회. 2020.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관련 피터슨 국제연구소와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전망. 워싱턴지부 통상정보

문한필·박지원·한봉희·윤정현·명수환. 2019. 미·중 무역전쟁 현황과 국내 농식품 분야 파급 영향. 현안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한봉희·우병준·박기흰. 2019.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김형진·한봉희·김명수. 2020. 한육우·돼지·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성주·문한필·김상현·오새라·명수환. 2018. 재편되는 국제무역질서, 농식품 교역의 현황과 도전, 농업전망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성주·오새라·박수연. 2019.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 현황과 시사점. 현안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STR. 2020.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웹사이트]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0. 1. 2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 2. 3.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8.08.07. "발명 이후 35년, 진화를 계속하는 PCR 기술" 〈https://www.bioin.or.kr/board.do?cmd=view&bid=issue&num=281148〉. 검색일: 2020. 1. 20.

스포츠서울. 2019.09.06. "영역 안 가리는 중국의 한국견제.분유업체 '공장실사조차 나오지 않아'"〈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15611〉. 검색일: 2020. 1. 20.

외교부. WTO SPS 국문 협정문. 〈http://www.mofa.go.kr/www/index.do〉. 검색일: 2020. 1. 20.

중국 재정부 관세사. 〈http://gss.mof.gov.cn/〉. 검색일: 2020. 1. 16.

한·중 FTA 양허안 중국측 관세양허표. 〈http://www.fta.go.kr/cn/〉. 검색일: 2020. 1. 20.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http://www.krei.re.kr:18181/new/〉. 검색일: 2020. 2. 3.

Global Trade Atlas. 〈https://connect.ihs.com/home〉. 검색일: 2020. 1. 17.

USDA FSIS. Export Library-Requirements by Country. 〈https://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xport-library-requirements-by-country〉. 검색일: 2020. 2. 3

KREI 현안분석

감 수	김미복 연구위원	061-820-2323	mbkim@krei.re.kr
내 용 문 의	조성주 부연구위원	061-820-2376	sungjucho@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70호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와 농업부문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0. 2.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